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녹색생활의 실천과 건강증진 일환으로 자전거 타기, 걷기 등 출퇴근 수단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고 대중교통에서의 범죄 및 사고 등 출퇴근길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종종 발생하여 출퇴근길 안전 확보 문제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직장인들이 자주 이용하는 대표적인 출퇴근 수단으로 대중교통, 자전거, 자동차 및 오토바이, 걷기, 택시 등을 선정하여 직장인들이 각각의 출퇴근 수단마다 이용 시 겪을 수 있는 대표적인 법적 문제들과 대응방법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김대리의 안전한 출퇴근길 1
1.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4
1.1. 알아두면 좋아요. 4
1.1.1. 알아두면 좋아요. 4
1.2. 기본예절 지키기 5
1.2.1. 부정승차 하지 않기 5
1.2.2. 교통약자 배려하기 6
1.3. 안전하게 이용하기 8
1.3.1.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8
1.3.2. 안전한 버스 만들기 11
1.3.3. 성범죄 대처하기 16
1.3.4. 유실물 찾기 17
1.4.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20
1.4.1. 피해보상 받기 20
1.4.2. 산재보상 받기 23
2. 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 25
2.1. 알아두면 좋아요. 25
2.1.1. 알아두면 좋아요. 25
2.2. 안전운전하기 27
2.2.1. 교통법규 지키기 27
2.2.2. 안전하게 주차하기 31
2.3. 사고 발생시 대처하기 34
2.3.1.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34
3.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38
3.1. 알아두면 좋아요. 38
3.1.1. 알아두면 좋아요. 38
3.2.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41
3.2.1. 교통법규 지키기 41
3.3.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48
3.3.1.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48
3.3.2. 피해보상 받기 49
4. 건강 9단! 걸어서 출퇴근하기 52
4.1. 알아두면 좋아요. 52
4.1.1. 알아두면 좋아요. 52
4.2.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53
4.2.1. 통행방법 지키기 53
4.2.2. 보행안전 보장받기 54
4.3.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57
4.3.1. 피해보상 받기 57
5. 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 60
5.1. 알아두면 좋아요. 60
5.1.1. 알아두면 좋아요. 60
5.2. 사고발생 시 대처하기 62
5.2.1. 피해보상 받기 62

1.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

1.1. 알아두면 좋아요.

1.1.1. 알아두면 좋아요.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이란

▪ 오늘 아침 출근길,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하셨나요? 아마 부지런하고 알뜰한 많은 직장인분들이 오늘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셨을텐데요. 그런데 대중교통이란 정확히 어떤 교통수단을 말하는 걸까요?

▪ ´대중교통´이란 노선버스(이하, ´버스´라 함)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교통체계를 말한답니다(「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

▪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기! 환경도 보호하고 건강도 지키고 게다가 빠르고 편리하기까지.. 정말 장점이 많지만 그 중에서도 팍팍한 주머니 사정상, 출퇴근비용이 적게 든다는 사실이 가장 감사한 듯합니다.

▪ 대중교통 출퇴근비용, 그 자체만으로도 저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좀 더 알뜰하게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데요, 지금부터 함께 알아볼까요?

> ※ 아래에서 소개하는 대중교통 알뜰 이용법은 < 내 손안에 서울 > 홈페이지와 <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의 관련 글들을 참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대중교통, 알뜰하게 이용하세요!

지하철 정기권 이용하기

▪ 대중교통 요금을 절약하는 첫 번째 방법은 지하철 정기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기권´이란 정해진 기간 동안 정해진 횟수를 쓸 수 있는 승차권을 말하는데, 정기권의 가격은 이용 횟수만큼의 운임보다 저렴합니다. 단골을 우대하는 장사의 원칙을 따른 승차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다소 번거롭더라도 할인율이 우세한 정기권을 이용하는 것이 더 알뜰하답니다.

▹ 다만, 정기권은 별도의 정기권 충전용 교통카드(2,500원)를 구입해야 하며, 버스를 탈 때는 이용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하철 정기권의 모습>

> ※ 지하철 정기권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서울지역의 경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후불카드보다 선불카드 이용하기

▪ 교통카드에는 선불카드와 후불카드가 있는데, 선불카드는 T-머니 교통카드에 돈을 충전시켜서 이용하는 것이고, 후불카드는 이달에 쓴 요금을 다음 달에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적용되는 요금은 같지만,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의 비율에서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 국세청의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규정에 따르면, 신용카드 등의 사용액이 총급여액의 25%를 넘을 때 대중교통 사용분 일부를 정해진 산식에 따라 소득공제 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만큼 세금을 덜 내도되는 것이지요.

> ※ 대중교통 사용분의 소득공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안내-개인신고안내-연말정산-연말정산 종합 안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주의할 점은 선불카드는 첫 구입 시 무기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Tmoney 카드&페이 홈페이지>에서 자기 이름으로 등록을 해두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울러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와 달리 미리 충전을 해두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울 수 있고, 다음 달 결제까지 이자수익을 얻지 못하는 단점은 있답니다.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신용카드 이용하기

▪ 최근에는 대중교통 요금을 할인해주는 신용카드가 많이 있죠?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직장인이라면 자신의 대중교통수단 이용패턴을 잘 따져서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를 선택하는 것도 알뜰한 대중교통 이용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1.2. 기본예절 지키기

1.2.1. 부정승차 하지 않기

부정승차하는 경우 부가운임을 내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하철 부정승차 처벌

▪ 다음과 같은 경우 지하철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예시)
1. 승차권을 소지하지 않고 열차를 이용하거나 운임지역 내로 무단 입장하였을 때 2. 이용 도중 승차권을 분실하였을 때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승차권이 무효가 되었을 때 ① 무임대상이 아닌 사람이 우대용 1회권 또는 우대용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② 어른이 어린이용이나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청소년카드 및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③ 청소년이 어린이용 및 우대용 1회권, 우대용 교통카드, 어린이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④ 승차권의 원형 및 표시된 사항을 고의로 훼손 또는 변조하였을 때 ⑤ 통용기간이 지난 승차권을 사용하였을 때 ⑥ 승차권 확인을 위해 직원의 신분증명서 제시요구 시 이를 제시하지 않을 때 ⑦ 그 밖의 부정승차의 수단으로 사용하였을 때 4. 승차권을 개표하지 않고 운임지역 내로 입장하였을 때 5. 승차권의 검사에 협조하지 않았을 때 6. 단체권에 기재된 인원(어른, 청소년, 어린이를 구분)을 초과하여 승차하였을 때 그 초과인원 7. 유효하지 않거나 도난, 분실 등 사고 처리된 교통카드를 사용하였을 때 8. 우대용카드 사용자가 유효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못하였을 때 (서울교통공사, 「여객운송약관」 제24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 참조)

▪ 지하철에 부정승차하는 경우 승차 구간에 해당하는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의 범위에서 부가운임을 부과됩니다(「철도사업법」 제10조제1항).

▹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유실된 타인의 교통카드를 횡령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버스 부정승차 처벌

▪ 다음과 같은 경우 시내버스 부정승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정승차에 해당되는 경우(예시)
1. 여객이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 2. 여객이 운임을 현금으로 지불하면서 부족하게 운임을 지불하는 경우 3. 여객이 초과운임의 지불을 회피할 목적으로 교통카드 단말기에 선·후불 교통카드를 미리 태그(접촉)하는 경우 등 4. 자격이 없는 자가 청소년교통카드·어린이교통카드·무임용교통카드 등을 이용하여 요금을 감면 받는 경우 (서울특별시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3조의2 참조)

▪ 시내버스 부정승차로 적발되면 그 운임 또는 부족하게 지불한 운임과 그 운임의 30배를 부가금으로 지불해야 하며, 부가금은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시내버스 운송사업 약관」 제13조의2).

▹ 무임승차를 하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39호).

▪ 유실된 타인의 교통카드를 횡령한 사람은 점유이탈물횡령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1.2.2. 교통약자 배려하기

교통약자는 이동권을 갖습니다.

교통약자 이동권

▪ "교통약자"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을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1호).

▪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교통약자, 어떻게 배려되나요?

이동편의시설 설치

▪ "이동편의시설"이란 휠체어 탑승설비, 장애인용 승강기,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步道), 임산부가 모유수유를 할 수 있는 휴게시설 등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여객시설 또는 도로를 이용할 때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과 설비를 말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제7호).

▪ 버스나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수단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9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1조 및 별표 1).

▪ 버스나 지하철에 설치해야 하는 이동편의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0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 및 별표 2).

이동편의 시설 대상시설		안내시설			내부시설				그 밖의 시설		
		안내 방송	문자 안내판	목적지 표시	휠체어 승강 설비	휠체어 보관함	교통 약자용 좌석	교통약자가 이용 가능한 화장실	손잡이	장애인 접근가능표시	출입구 통로
버스	시내버스 (저상형)	○	○	○	○		○		○	○	
	시내버스 (일반형)	○	○	○	○		○		○	○	
	시내버스 (좌석형)	○	○	○	○		○			○	
	농어촌 버스	○	○	○	○		○		○	○	
	마을버스	○	○	○	○		○		○	○	
	시외버스	○	○	○	○		○			○	
도시철도차량		○	○	○			○		○	○	○
철도차량		○	○	○	○	○	○	○		○	○
궤도차량		○	○	○			○		○	○	○
광역철도		○	○	○			○		○	○	○

▪ 교통사업자는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하는데요. 교통사업자가 만약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교통행정기관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명하거나 위에 따른 설치기준에 맞게 이동편의시설을 개선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

▪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시정기간 이내에 이행하지 않은 교통사업자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9조의2제1항).

안전하고 편리한 노선버스 이용 보장

▪ 노선버스 운송사업자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하차 시간을 충분히 주어야 하고, 승하차 편의를 제공해야 하며, 저상버스 및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등 교통약자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가진 버스(이하 “저상버스등”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일반버스와 저상버스의 배차순서를 적절히 편성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1항).

▪ 저상버스 등을 다음의 대수(臺數) 이상 운행하려는 사업자가 우선적으로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2항 및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4조제1항).

- 저상버스의 경우 : 다음의 대수
  - √ 특별시와 광역시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 시(특별시와 광역시는 제외)와 군 : 운행하고자 하는 버스 대수의 3분의 1
-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버스: 운행하려는 버스 대수의 2분의 1

▪ 시장이나 군수가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도지사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는 저상버스등의 도입, 저상버스등의 운행 및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버스정류장과 도로 등 시설물의 정비 계획을 반영하고, 이에 따라 저상버스 등을 도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경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4조제3항 및 제4항).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이 보장됩니다.

▪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지하철 이용을 위해 지하철 차량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부분은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배정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15조제1항).

▹ 교통약자 전용구역의 좌석은 교통약자가 이용하기 편리한 구조와 재질로 하고 색상은 일반좌석과 구분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

▹ 그리고 교통약자 전용구역으로 지정된 차량의 외부에는 교통약자가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임을 표시하는 그림표지를 부착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

▹ 또한, 교통약자 전용구역에는 휠체어 사용자를 위한 전용공간을 2곳 이상 지정하고 휠체어 고정설비 및 손잡이를 설치해야 합니다(「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

<교통약자 지하철 이용팁>

· 천만 서울시민의 발인 지하철. 몸이 불편한 교통약자도 예외 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울교통공사에서는 다양한 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타지하철' 앱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또타지하철' 앱의 '교통약자' 버튼을 누르면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영상전화기(수화)가 어떤 역에 위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유모차나 휠체어를 이용하는 승객들이 어려움을 겪는 승강기 점검이나 수리 현황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 이 외에도 앱에서 바로 문자를 보내 서울시설공단의 장애인 콜택시 서비스를 요청할 수도 있고, 화면 좌측 상단의 '≡'모양을 눌러 노선도 색약 설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 콜센터, 고객안내센터에 이동 도우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거나 또타지하철 앱을 이용하기가 어려울 때는 콜센터(1577-1234)로 연락하거나 직접 역 고객안내센터를 방문해서 시각장애인 안내가 필요할 때, 휠체어가 필요할 때, 열차와 승강장 사이가 넓어서 도움이 필요할 때 등 다양한 이동 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혼자 지하철을 이용하기 힘든 시각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하는 역 고객안내센터 또는 콜센터에 이동동선을 알려주면 직원이 동행하여 승차, 환승 및 외부 출입구로의 이동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역에서는 휠체어를 보유하고 있으며 도움이 필요한 경우,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역 또는 콜센터로 연락하면 됩니다.

·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www.seoulmetro.co.kr)에 방문하면 교통약자 편의시설에 대한 다양하고,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 자료출처 : 알아두면 유용한 교통약자 지하철 이용팁>

1.3. 안전하게 이용하기

1.3.1. 안전한 지하철 만들기

지하철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지하철 운영 및 지하철 시설의 안전관리

▪ 지하철운영자 및 지하철시설관리자(이하 ´지하철운영자 등´이라 함. 전용철도의 운영자는 제외함)는 지하철운영을 하거나 지하철시설을 관리하려는 경우에는 인력, 시설, 차량, 장비, 운영절차, 교육훈련 및 비상대응계획 등 지하철 및 지하철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유기적 체계(이하 ´안전관리체계´라 함)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안전관리체계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음)을 받아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1항 및 제3항 본문).

▹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안전관리체계가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한지를 검사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7조제4항).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지 않고 지하철운영을 하거나 지하철시설을 관리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철도안전법」 제79조제2항제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관리체계의 승인을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호).

▪ 지하철운영자 등은 지하철운영을 하거나 지하철시설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위의 규정에 따라 승인받은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8조제1항).

▹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관리체계 위반 여부 확인 및 철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지하철운영자 등이 안전관리체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지 정기검사 및 수시검사를 통해 점검·확인할 수 있고, 검사 결과 안전관리체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지 않거나 그 밖에 지하철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8조제2항 및 제3항).

※ 위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철운영이나 지하철시설의 관리에 중대하고 명백한 지장을 초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2호).

안전운행 관리

지하철 운행의 일시중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열차의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지하철 운행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0조제1항).

▹ 지진, 태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 또는 악천후로 인하여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재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그 밖에 열차운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지하철 지연으로 지각했다면? 간편지연증명서 발급받으세요>**
>
> · 서울교통공사 운영 구간에서 발생한 열차 지연정보로서 사고 등으로 인하여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되었을 때에는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 가까운 역에서 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http://www.seoulmetro.co.kr/kr)를 통해 간편지연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 <출처: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이용정보-간편지연증명서>

위해물품의 휴대금지

▪ 누구든지 무기, 화약류, 유해화학물질 또는 인화성이 높은 물질 등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물건 또는 물질(이하 ´위해물품´이라 함)을 지하철에서 휴대할 수 없습니다(「철도안전법」 제42조제1항 본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8조제1항).

1. 화약류
2. 고압가스

3. 인화성액체

4. 가연성 물질류

5. 산화성 물질류

6. 독물, 병독을 옮기기 쉬운 물질 등 독물류

7. 방사성 물질

8. 생물체의 조직에 심한 위해를 주거나 또는 열차의 차체 등에 물질적 손상을 주는 부식성 물질

9. 객실승무원이 정상근무를 할 수 없도록 극도의 고통이나 불편함을 발생시키는 마취성 물질

10. 총포·도검 및 이에 준하는 흉기류

11. 위 1.부터 10.까지 외의 것으로서 화학변화 등에 의해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열차 안에 적재된 물건에 물질적인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

▪ 철도종사자는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한 사람 및 그 위해물품을 열차 밖이나 다음의 지역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2조).

▹ 정거장

▹ 철도신호기·철도차량정비소·통신기기·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 정당한 사유 없이 열차에서 위해물품을 휴대하거나 적재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6호).

승객안전을 위한 보안검색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지하철 차량의 안전운행 및 지하철 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열차에 승차하는 사람의 신체·휴대물품 및 수하물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2제1항).

▹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는 위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한도에서 수갑, 포승, 가스분사기, 전자충격기, 경비봉 등의 직무장비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8조의5제1항 및 제2항).

▹ 철도종사자는 위 보안검색에 따르지 않은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6호).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 준수

▪ 열차 또는 지하철 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는 철도의 안전·보호와 질서유지를 위하여 하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1항).

▹ 철도종사자는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 철도종사자의 직무상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1항제14호).

▪ 누구든지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9조제2항).

▹ 철도종사자는 그의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사람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킬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7호).

▹ 폭행·협박으로 철도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1항).

지하철 금지행위

지하철 금지행위

▪ 지하철에서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면 안 됩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1항·제2항,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9조 및 제80조).

1. 정당한 사유 없이 운전실, 기관실, 발전실, 방송실 등 승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운행 중에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철도차량의 옆면에 있는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등 철도차량의 장치 또는 기구 등을 조작하는 행위
3. 열차 밖에 있는 사람을 위험하게 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
4. 흡연하는 행위
5. 철도종사자와 승객 등에게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
6.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
7. 승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데리고 타거나 휴대하는 행위
8. 법정 전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열차에 타는 행위
9.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승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배부 또는 연설·권유 등을 하여 승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
10. 다른 사람을 폭행하는 행위

▪ 운전업무종사자, 여객승무원 또는 여객역무원은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금지행위의 제지 및 금지행위의 녹음·녹화 또는 촬영을 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47조제3항).

지하철 금지행위 처벌

▪ 철도종사자는 위의 금지행위를 한 사람 및 그 물건을 열차 밖이나 지하철 역사 밖으로 퇴거시키거나 철거할 수 있습니다(「철도안전법」 제50조제4호).

▪ 위 1. 및 3.을 위반하여 여객출입 금지장소에 출입하거나 물건을 여객열차 밖으로 던지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2항제8호).

▪ 위 2.를 위반하여 운행 중 비상정지버튼을 누르거나 승강용 출입문을 여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3항제18호).

▪ 위 4.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4항제2호).

▪ 위 5.를 위반하여 성적(性的)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5항).

▪ 위 6.을 위반하여 술을 마시거나 약물을 복용하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철도안전법」 제79조제4항제12호).

▪ 위 7.을 위반하여 공중이나 여객에게 위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철도안전법」 제82조제5항제2호).

1.3.2. 안전한 버스 만들기

버스안전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버스의 안전관리

▪ "천연가스 버스"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버스를 말하는 것으로, 특히 서울 및 수도권에서 손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인데요. 아래 사진처럼 ´천연가스 버스´ 표시가 부착된 버스, 여러분들도 출퇴근길에 종종 이용하시죠?



<천연가스 버스의 모습>

▪ 그런데, 잊을만하면 들려오는 천연가스 버스의 잇따른 폭발사고 소식 탓에 천연가스 버스로 출퇴근하는 시민들께서는 가끔 혹시나 하는 불안감을 느끼실 지도 모르겠습니다.

▪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천연가스 버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압용기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 ※ "내압용기"란 천연가스와 같은 고압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 자동차에 장착하거나 장착할 목적으로 제작된 용기(용기밸브와 용기안전장치를 포함함)를 말하는 것으로, 천연가스 버스 안전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2조제4호의2).

▪ 내압용기의 안전관리에 관한 「자동차관리법」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내압용기는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성능과 기준(이하 ´내압용기안전기준´이라 함)에 적합해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5).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를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4항제13호의2).

> ※ 내압용기 안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57조의7 및 별표 5의6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내압용기가 장착된 버스의 소유자는 내압용기검사를 받은 이후에도 일정기간의 경과, 내압용기의 손상 발생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내압용기 정기검사 및 내압용기 수시검사 등의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자동차관리법」 제35조의8제1항).

√ 이를 위반하여 내압용기재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자동차관리법」 제79조제10호).

안전운행 관리는 어떻게 이뤄지나요?

버스운전자격제

▪ 버스를 운전하려면 여객자동차운수 관계 법령과 지리 숙지도(熟知度)에 대한 시험에 합격한 후 버스운전자격증을 취득하거나 교통안전체험에 관한 연구·교육시설에서 교통안전체험, 교통사고 대응요령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령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이론 및 실기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2항).

▹ 위 자격을 갖추지 않고 버스를 운전한 사람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2항제6호).

> ※ 버스운전 자격시험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매월 1회 이상 시행하되, 매년 최초 시험시행일 30일 전까지 그 해의 시험시행계획을 공고합니다. 다만, 시험시행기관은 운전자의 수급사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전자격시험의 횟수를 조정하여 공고한 후 시험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51조제1항).

특정 범죄 전력자 및 일정한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을 받은 사람의 버스 운전자격 취득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버스 운전자격을 취득할 수 없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4조제3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禁錮)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함)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죄
    -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부터 제5조의5까지, 제5조의8, 제5조의9 및 제11조에 따른 죄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죄
    - √ 「형법」 제332조(「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상습범으로 한정), 제341조에 따른 죄 또는 그 각 미수죄, 제363조에 따른 죄
  - 위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버스운전 자격시험일 전 5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까지에 해당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 「도로교통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 운전 중 고의 또는 과실로 3명 이상이 사망(사고발생일부터 30일 이내에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거나 20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 버스운전 자격시험일 전 3년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
    -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행해진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
    - √ 공동 위험행위를 한 경우 및 난폭운전을 한 경우(「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여 행해진 운전면허 취소처분

승객의 안전띠 착용 의무

-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도로나 농어촌도로에서 운행되는 광역급행버스 및 시외버스(고속버스 포함)에 탑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 신장·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버스운전사는 기점 및 경유지에서 승차하는 승객에게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버스운전사의 준수 사항

▪ 버스운전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1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및 별표 4제2호).

1. 정당한 사유 없이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승객을 중도에서 내리게 하는 행위
2.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3. 일정한 장소에 오랜 시간 정차하여 승객을 유치(誘致)하는 행위
4. 문을 완전히 닫지 않은 상태에서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운행하는 행위
5. 승객이 승하차하기 전에 버스를 출발시키거나 승하차할 승객이 있는데도 정차하지 않고 정류소를 지나치는 행위
6. 안내방송을 하지 않는 행위(안내방송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함)
7.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행위
8. 휴식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
9. 운전 중에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휴대전화 등 운전자가 휴대하는 것을 포함)를 이용하여 영상물 등을 시청하는 행위.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

   √ 운전 시 자동차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영상

10. 그 밖에 안전운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버스운전사가 지켜야 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 승객의 안전과 사고예방을 위하여 운행 전 버스의 안전설비 및 등화장치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것

    √ 질병·피로·음주나 그 밖의 사유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정을 해당 운송사업자에게 알릴 것

    √ 버스의 운행 중 중대한 고장을 발견하거나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즉시 운행을 중지하고 적절한 조치를 할 것

    √ 운전업무 중 해당 도로에 이상이 있었던 경우에는 운전업무를 마치고 교대할 때에 다음 운전자에게 알릴 것

    √ 승객이 다음 행위를 할 때에는 안전운행과 다른 승객의 편의를 위해 이를 제지하고 필요한 사항을 안내할 것

      1) 다른 승객에게 위해(危害)를 끼칠 우려가 있는 폭발성 물질, 인화성 물질 등의 위험물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2) 다른 승객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불쾌감을 줄 우려가 있는 동물(장애인 보조견 및 전용 운반상자에 넣은 반려동물은 제외함)을 버스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행위

      3) 버스의 출입구 또는 통로를 막을 우려가 있는 물품을 버스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

      4)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고 좌석을 이탈하여 돌아다니는 행위

      5) 운행 중인 버스 안에서 가요반주기·스피커·조명시설 등을 이용하여 안전 운전에 현저히 장해가 될 정도로 춤과 노래를 하는 등 소란스럽게 하는 행위

    √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신분증 또는 자격증의 제시 요구를 받으면 즉시 이에 따를 것

    √ 승객이 타고 있는 때에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 것

    √ 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버스의 운행을 중단할 때에는 사고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 관할관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복장 및 모자를 지정할 경우에는 그 지정된 복장과 모자를 착용하고, 용모를 항상 단정하게 할 것

√ 버스 운수종사자는 대열운행을 해서는 안 됨

√ 승객의 안전한 승차·하차 여부를 확인하고 자동차를 출발시킬 것

√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운송사업자가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할 것

※ 위를 위반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운전 중 영상물을 시청한 버스운전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4조제3항제4호 및 제94조제2항제6호의2).

운행 중인 버스운전사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

▪ 얼마 전 만취상태로 마을버스에 탄 승객이 버스운전사를 폭행한 사건이 뉴스에 보도된 적이 있는데요. 이 사건 외에도 최근 이 같은 버스운전사 폭행사건이 잇따라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 버스운전사는 물론 승객모두의 안전을 위해서도 결코 이런 일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텐데요. 더불어 운행 중인 버스기사에 대해 폭행 등의 행위를 하면 일반적인 폭행 등의 행위에 비해 다음과 같이 보다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 운행 중(「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위해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중 운전자가 여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 운행 중인 버스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버스 내 영상기록장치(CCTV)의 설치

▪ 버스사업자는 버스의 운행상황 기록, 교통사고 상황 파악, 차량 내 범죄예방을 위해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 본문).

▹ 다만, 운행기록장치가 영상기록장치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한 것으로 봅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1항 단서).

▪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운수종사자, 승객 등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안내판 설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2항).

▪ 버스사업자는 영상기록장치와 관련하여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3제3항).

▹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기록장치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 운행기간 외에 영상기록을 하는 행위

▹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음성기록을 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1조제2호).

버스에서의 금지행위

버스에서의 금지행위

▪ 버스로 출퇴근하다보면 지나친 행동으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을 가끔 목격할 수 있는데요.

▪ 버스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

▹ 물품강매·호객행위: 요청하지 않은 물품을 억지로 사라고 한 사람, 요청하지 않은 일을 해주거나 재주 등을

부리고 그 대가로 돈을 달라고 한 사람 또는 버스에서 영업을 목적으로 떠들썩하게 손님을 부른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8호).

▹ 쓰레기 등 투기 : 담배꽁초·껌·휴지·쓰레기·죽은 짐승 그 밖의 더러운 물건이나 못쓰게 된 물건을 함부로 버스에 버린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1호).

▹ 노상방뇨 등 : 버스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않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2호).

▹ 불안감조성 : 정당한 이유없이 길을 막거나 시비를 걸거나 주위에 모여들거나 뒤따르거나 또는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 또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거나 귀찮고 불쾌하게 한 사람 또는 버스에서 고의로 험악한 문신을 노출시켜 타인에게 혐오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19호).

▹ 음주소란 등 : 버스에서 몹시 거친 말 또는 행동으로 주위를 시끄럽게 하거나 술에 취하여 이유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정한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20호).

▹ 과다노출 :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3호).

※ 버스에서 담배를 피운 사람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8항 및 제34조제3항제2호).

1.3.3. 성범죄 대처하기

대중교통 성범죄,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 최근 버스나 지하철에서 성추행이나 불법촬영으로 여성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불쾌한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 여러분께서는 활기찬 하루를 여는 출근길에 이런 일 절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대중교통 성범죄 예방 및 대처요령! 소개해 드립니다.

▹ 지하철역 계단의 경사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고 에스컬레이터가 긴 곳에서는 가방을 뒤로 매거나 손에 들고 있는 책 등을 뒤쪽으로 합니다. 또한 자세를 옆쪽으로 향해 서 있는 것도 범죄예방에 좋다고 하네요.

▹ 가벼운 신체접촉이라도 현장에서 즉시 불쾌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해야 합니다.

▹ 혼잡한 지하철에서는 가급적 맨 앞쪽이나 뒤쪽 칸을 이용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성추행범들은 항상 범행이 발각될 경우를 대비하여 도주상황을 염두에 두는데, 맨 앞쪽이나 뒤쪽 칸에서는 한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범행장소로 부적합하다고 생각한답니다.

▹ 혼잡한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낯선 남성이 뒤쪽에서 다가오면 등을 보이기보다는 45도 각도를 위치해 서거나 자세를 바꿔 어깨를 조금 틀어주면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 자리를 옮길 수 있는 경우 다른 자리로 과감하게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 휴대전화를 활용한 112 문자메시지를 적극 이용해보세요.

√ 성추행범들은 피해 여성이 수치심이나 모멸감 등으로 쉽게 신고를 하지 못한다는 점을 악용하여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적극적인 신고는 무엇보다 효과적인 범죄예방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 만약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범을 보거나 자신이 피해를 당했다면 즉시 휴대전화를 꺼내 112로 문자메시지를 보내세요.

※ 특히 지하철의 경우에는 타고 있는 지하철 칸 번호(열차 칸 출입문, 열차 객실간의 통로 벽면 위쪽에 부착되어 있어요!)와 이동방향을 발송(통과하고 있는 역을 함께 보내면 더욱 좋음)해주세요(예를 들어, 08:20분 현재 사당역에서 방배방향 출발열차 차량번호 4169 3~4번 출입문 사이, 검정색 점퍼착용 20대 남성 성추행범 잡아주세요).

√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지하철 경찰대나 인근 경찰서에서 즉각 출동하여 범인을 검거합니다.

<출처 : 서울교통공사 공식 블로그, 열차 내 위급상황 대처법 참고>

어떻게 처벌되나요?

▪ 버스나 지하철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 버스나 지하철에서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1항).

> ※ 대법원은 "피고인이 지하철 환승에스컬레이터 내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뒤에 서서 카메라폰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치마 속 신체 부위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동영상 촬영하였다고 하여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휴대폰을 이용하여 동영상 촬영을 시작하여 일정한 시간이 경과하였다면 설령 촬영 중 경찰관에게 발각되어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더라도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행은 이미 기수에 이르렀다고 볼 여지가 매우 큰데도 피고인이 동영상 촬영 중 저장버튼을 누르지 않고 촬영을 종료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위 범행이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단정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 중 기수의 점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로 인한 심리미진 또는 이유모순의 위법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6. 9. 선고 2010도10677 판결).

▪ 위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함. 이하 같음)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함)한 자 또는 위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함)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2항).

▪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반포등을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 집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제3항).

1.3.4. 유실물 찾기

버스나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출퇴근길 버스나 지하철에서 잠시 졸거나 이런저런 생각에 잠겨있다 보면 자칫 내려야 할 역에서 급히 내리느라 소지품을 두고 내리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 특히 카드와 신분증이 든 지갑이나 휴대폰 등과 같은 중요한 물건을 두고 내린 것을 알아채는 순간! 식은땀이 날 정도로 당황스러운데요.

※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당황해서 우왕좌왕하기보단 이렇게 대처해보세요.

버스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우선 해당 버스회사에 신속히 연락하여 유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합니다. 아직 접수되지 않은 경우 버스 노선, 버스 번호, 버스 안의 어디쯤에 어떤 물건을 두고 내렸는지를 가능한 상세히 설명하고 연락처를 남겨두도록 하세요.

▪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민원24(https://minwon24.police.go.kr)>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각 지역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서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http://www.seoul.go.kr)를 소개합니다!>

· 이 사이트는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핸드폰찾기콜센터>와 협력하고 있어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분실한 휴대폰도 찾을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시민들을 위해서는 <120 다산 콜재단>이 24시간 대기중인데요. 언제든 국번없이 120으로 전화 한 통화만하면 잃어버린 물건이 어디에 등록 되어 있고 어디에 보관되어 있는 지 친절히 안내해 준다고 하네요.

지하철에 물건을 두고 내린 경우

▪ 우선 자신이 탔던 지하철의 종착역과 내린 역에 연락합니다. 환승하셨다면 환승하신 구간 모두의 종착역에 연락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지하철의 경우 하루에 처리하는 분실물의 양만해도 어마어마하다고 하니 연락을 하실 때는 가급적 분실물의 특징(분실시간, 생김새, 내용물, 특징 등)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 또한, 가까운 경찰서나 순찰지구대에 문의하거나 <경찰민원24>에 접속하여 유실물 접수여부를 확인하거나 분실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 그리고, 각 지역의 지하철운영기관 홈페이지나 대중교통 분실물센터에 접속하여 자신이 잃어버린 물건을 보관하고 있지 않은 지 확인해 볼 수도 있습니다.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신분증 분실신고, 서두르세요.

▪ 대중교통에 두고 내린 물건을 찾게 되면 정말 다행스럽겠지만 결국은 잃어버린 채 찾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런 경우 흔히들 신용카드 사용정지는 즉시 신청하지만 신분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는 그리 서두르지 않으시는 듯합니다.

▪ 하지만 분실한 신분증은 명의도용 등 범죄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로 인해 분실자에게 막대한 피해가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신분증 분실신고는 가능한 신속히 하시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 신분증 중에서도 지갑에 넣고 다니는 경우가 많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절차, 알아볼까요?

주민등록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 우선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정부24(www.gov.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주민등록증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주민등록법」 제27조제1항 및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 재발급 신청 시에는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신청인의 모자 등을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1장과 재발급 수수료 5,000원이 필요합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별지 제32호서식).

▪ 분실신고 후 재발급되기 전까지 필요한 경우 임시 신분증인 <주민등록증 발급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분증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1조 및 별지 제33호서식).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및 재발급 받기

▪ 우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거나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 접속하여 자동차운전면허증 분실사실을 신고하고 재발급 신청서를 작성하여 재발급 신청을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0조제1항 및 별지 제59호서식).

▹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여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신분증을 제출하고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지 제59호서식).

※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시 필요한 신분증과 수수료 등 자세한 내용은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www.safedriving.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거주지나 직장에서 운전면허시험장이 너무 멀어서 불편하다면 가까운 경찰서를 이용해 보세요. 다만, 이 경우 면허증 재발급까지 약 2주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6조).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할 여건은 안 되어 부득이 경찰서를 이용해야 하는데 당장 면허증이 필요하시다면 경찰서에서 면허증 재발급을 신청하실 때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으세요(「도로교통법」 제91조제1항제1호).

경찰서에서 재발급 신청을 하실 때에도 신분증과 재발급 수수료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운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분실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면 직접 돌려줘도 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주운 물건을 버스의 경우 해당 버스의 운전자에게, 지하철의 경우 가까운 역의 개찰구 앞에 있는 고객센터에 인도하면 됩니다.
- 또한,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에 제출해도 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 휴대폰을 주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나요?

-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을 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20까지의 범위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 다만,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4조 및 제6조).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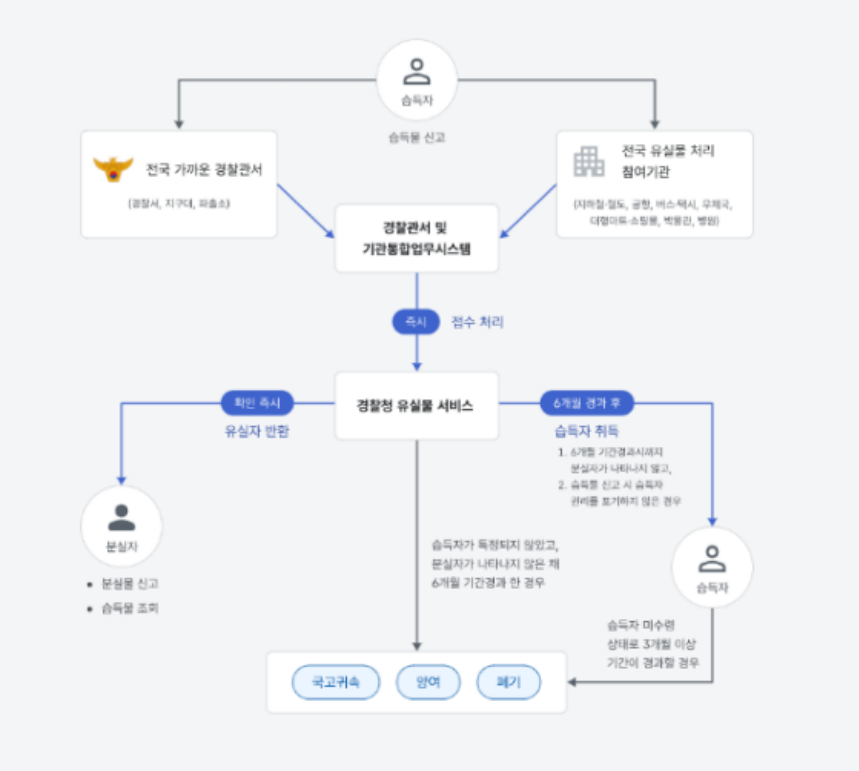
-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이렇게 처리됩니다.

- 주인을 찾지 못한 물건들은 버스회사나 지하철 유실물센터 등에서 7일간 보관된 후, 관할 경찰서로 넘겨지는데요(출처 : 경찰민원24 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신청·안내).
- 경찰서가 보관한 물건이 교부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됩니다(「유실물법」 제15조).

※ 유실물 처리절차를 그림으로 한 눈에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경찰민원24 홈페이지-민원서비스-민원신청·안내>

1.4.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1.4.1. 피해보상 받기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버스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 버스추돌사고, 급정차나 급출발 때문에, 폭우나 폭설 등으로 버스 안이 미끄러워서등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다치거나 소지품이 망가지는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만약 오늘 아침 출근길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버스로 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나 그 밖의 승무원(이하 ´운전사등´이라 함)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위의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 위의 경우 그 버스의 운전사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 교통사고가 일어난 경우에는 누구든지 위에 따른 운전사등의 조치 또는 신고행위를 방해하여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5조).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 또는 신고 행위를 방해한 사람은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1항제5호).

▹ 사고발생 신고를 받은 경찰서의 경찰공무원은 부상자의 구호와 그 밖의 교통위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함)이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신고한 운전자등에게 현장에서 대기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3항).

▹ 경찰공무원은 교통사고를 낸 버스의 운전사등에 대하여 그 현장에서 부상자의 구호와 교통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명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4항).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버스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일반적으로는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나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조).

▪ 대중교통 상해보험 등 대중교통 이용 중 발생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해 두셨다면 해당 보험회사에 사고통보를 하시고 경찰서 신고 여부에 대한 자문과 신속한 보상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지하철출퇴근 중 사고가 난 경우

▪ 열차의 충돌·탈선사고, 화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지하철 출퇴근 중에도 신체상·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이럴 땐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 어떤 조치가 취해지나요?

▹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 등´이라 함)는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 등´이라 함)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사상자 구호, 유류품(遺留品) 관리, 여객 수송 및 철도시설 복구 등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열차를 정상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60조제1항).

√ "철도사고"란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1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2).

1. 철도교통사고: 충돌사고, 탈선사고, 열차화재사고, 기타철도교통사고
2. 철도안전사고: 철도화재사고, 철도시설파손사고, 기타철도안전사고

√ "철도준사고"란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2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3).

1. 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하는 경우
2. 열차가 운행하려는 선로에 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가 표시되는 경우. 다만, 복구 및 유지 보수를 위한 경우로서 관제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외
3.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승인 없이 정지신호를 지난 경우
4. 열차 또는 철도차량이 역과 역사이로 미끄러진 경우

5. 열차운행을 중지하고 공사 또는 보수작업을 시행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주행한 경우

6.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레일 파손이나 유지보수 허용범위를 벗어난 선로 뒤틀림이 발생한 경우

7.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철도차량의 차륜, 차축, 차축베어링에 균열 등의 고장이 발생한 경우

8. 철도차량에서 화약류 등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이 누출된 경우

9. 위 1.부터 8.까지의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

√ "운행장애"란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철도안전법」 제2조제13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4).

1. 관제의 사전승인 없는 정차역 통과

2. 다음의 구분에 따른 운행 지연. 다만, 다른 철도사고 또는 운행장애로 인한 운행 지연은 제외

가.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나.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다.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 이상

▹ 철도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업무종사자와 여객승무원은 철도사고 등의 현장을 이탈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후속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40조의2제5항 본문 및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8제1항).

1. 관제업무종사자 또는 인접한 역시설의 철도종사자에게 철도사고 등의 상황을 전파할 것

2. 철도차량 내 안내방송을 실시할 것

※ 다만, 방송장치로 안내방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안내해야 합니다.

3.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 내 여객을 대피시킬 것

4. 2차 사고 예방을 위하여 철도차량이 구르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할 것

5. 여객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철도차량의 비상문을 개방할 것

6. 사상자 발생 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되도록 지원할 것

▹ 철도사고 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 등은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철도안전법」 제60조제2항 및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56조).

√ 사고수습 또는 복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인명의 구조 및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에의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 피해보상은 어떻게 받나요?

▹ 지하철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책임보험"이란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할 책임을 진 경우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책임이행으로 발생할 손해를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손해보험계약을 말합니다(국가법령정보센터-법령용어사전).

> ※ 책임보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보험계약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4.2. 산재보상 받기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본문).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진폐에 대한 보험급여는 제외)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상병보상연금, 장례비, 직업재활급여가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6조제1항).

>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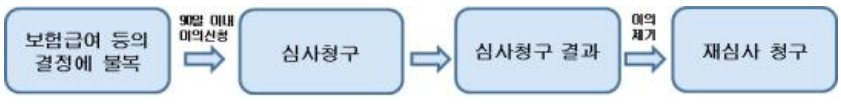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산재보상 보험급여결정이 불만족스럽다면 이렇게 하세요.

근로복지공단에 심사(재심사)청구하기

▪ 산재보상 보험급여의 결정은 근로복지공단이 내리게 되는데 해당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를 심사청구라고 합니다. 또한, 심사청구 결과 결정된 내용에 불복하는 경우 다시 이의제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는 재심사청구라고 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1항 및 제106조제1항 본문).

▪ 심사(재심사)청구는 보험급여 등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재심사의 경우는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보험급여 등의 결정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 접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다음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집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3조제2항·제3항 및 제106조제2항·제3항).



※ 근로복지공단의 심사청구절차, 신청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 콘텐츠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의 제기절차와 방법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산업재해보상보험 II (보험급여)> 콘텐츠 또는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

2.1. 알아두면 좋아요.

2.1.1. 알아두면 좋아요.

자전거 출퇴근에 도전해보세요.

자전거 출퇴근

▪ 자전거 타기는 대표적인 유산소 운동이므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건강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전거는 화석연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교통수단이므로 자전거로 출퇴근하면 교통비용이나 환경비용 등과 같은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을 줄여 국가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 기특한 출퇴근방법, 자전거 타기! 여러분도 한 번 도전해보세요!

자전거는 "차"입니다.

자전거는 "차"

▪ "자전거"란 사람의 힘으로 페달 또는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 구동장치와 조향장치, 제동장치가 있는 두 바퀴 이상의 차를 말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자전거는 ´차´이므로 모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전거운전자 기본상식, 알아두면 좋아요.

자전거 안전표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 자전거운전자는 다음의 안전표지에 따라 교통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 및 별표 6).

				
자전거전용도로 자전거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표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와 보행자가 함께 다닐 수있는 도로	자전거주차장 자전거를 주차할 수있는 지역	자전거횡단도 자전거가 길을 건널 수 있는 구역(타고 건널 수 있음)	자전거 횡단도 노면표시
				
자전거전용도로 노면표시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도로	횡단보도 횡단보도임을 표시 (자전거는 끌고 가야함)	어린이보호 어린이 또는 영유아의 보호를 지시하는 표시	자동차전용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전용구간임을 지시
				
자전거통행금지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	통행금지표시 보행자 및 차마의 통행을 금지	어린이보호표지 학교, 유치원 등의 통학,통원로 및 어린이 놀이터가 있음을 알림	자전거표지 자전거 통행이 많은지점임을 알림	자전거 및 보행자통행구분도로표지 자전거 및 보행자 겸용도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를 구분하여 통행하도록 지시하는 것

안전한 이용을 위한 기본습관

- 자전거의 오른쪽으로 타고 내립니다.
  - · 우측통행, 끝 차로의 가장자리 이용, 좌측 추월 등의 교통조건에서 왼쪽으로 내릴 경우 뒤편에서 오는 차량들(자전거 포함)과 추돌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 브레이크의 위치를 확인합니다.
  - · 앞뒤브레이크의 기능이 다름으로 인해 잘못 조작하였을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주행 중 앞브레이크를 조작할 경우 전복될 위험이 있으며, 뒤브레이크를 조작할 경우 뒷바퀴가 미끄러지며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브레이크를 잡은 상태에서 타고 내립니다.
  - · 브레이크를 잡으면 자전거가 움직이지 않아 안전합니다.
  - · 브레이크를 잡지 않으면 자전거가 움직이는 상태가 되어 불안전합니다.
- 변속기부착 자전거는 체인 위치를 확인합니다.
  - · 왼쪽페달을 뒤로 돌려 체인의 정상위치를 확인합니다.

· 체인이 정상위치에 놓여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페달을 돌리는 순간 체인이 정상 위치로 찾아가기 위해 움직이면서 자전거의 중심을 무너트려 안전에 위험합니다.

- 정지상태에서 타고 내립니다.

· 출발은 왼발로 페달을 밟고, 오른발로 지면을 밀면서 안장에 앉아 페달을 젓는 출발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멈추기는 출발의 역순, 왼쪽 페달을 딛고 일어선 뒤, 속도를 줄이면서 오른발로 땅을 딛는 멈추기를 합니다.

· 내리기는 자전거가 완전히 멈춘 뒤 주변을 살핀 후 내립니다.

※ 퀵스타트(한쪽 페달을 딛고 자전거가 앞으로 가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는 출발)는 삼가해야 합니다.

· 출발 전 반드시 앞과 뒤, 주변을 살핀 뒤 수신호(좌회전 수신호)로 출발을 알립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성인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 타기』(2021), 6쪽>

※ 자전거의 통행원칙과 통행방법, 바른 주행자세와 변속기 사용방법, 자전거 점검과 관리 등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을 위한 더 많은 정보는 <행정안전부, 『성인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 타기』(202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2. 안전운전하기

2.2.1. 교통법규 지키기

자전거운전자가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자전거운전자가 알아둘 교통관련법규

▪ 자전거는 ´차´이므로 모든 자전거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

▹ 그렇다면 자전거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신호와 지시에 따를 의무

▹ 자전거운전자는 신호등과 경찰관이나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모범운전자 등 경찰보조자들이 하는 신호와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자전거도로나 차도로 통행할 의무

▹ 자전거도로가 따로 있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도로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

<"자전거도로"란 무엇인가요?>

· "자전거도로"란 안전표지, 위험방지용 울타리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자전거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8호).

· 자전거도로는 다시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본문).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만이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境界石),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 및 보도와 구분하여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자전거 외 보행자도 통행할 수 있도록 분리대, 경계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의하여 차도와 구분하거나 별도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 전용차로: 차도의 일정 부분을 자전거만 통행하도록 차선(車線) 및 안전표지나 노면표시로 다른 차가 통행하는 차로와 구분한 차로

√ 자전거 우선도로: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인 도로의 일부 구간 및 차로를 정하여 자전거와 다른 차가 상호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에 노면표시로 설치한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가 없는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도로 외의 곳에 출입하는 때에는 보도를 횡단하여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1항).

※ 위의 차도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자전거운전자는 길가장자리구역(안전표지로 자전거의 통행을 금지한 구간을 제외)을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3항).

▪ 자전거운전자는 보도를 통행해서는 안 되지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도를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보도의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지로 지정된 곳으로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되는 때에는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4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어린이, 노인, 그 밖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단, 전기자전거의 원동기를 끄지 않고 운전하는 경우는 제외)

√ 신체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

√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도로 횡단방법

▪ 자전거횡단도가 있는 경우 자전거횡단도를 이용하여 자전거를 타고 지나갑니다(「도로교통법」 제15조의2).

▪ 자전거횡단도가 없어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도로를 횡단할 때에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6항).

도로의 우측통행의무

▪ 도로가 일방통행인 경우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반드시 도로의 우측부분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

▪ 도로의 우측통행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 다만,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가 있는 도로에서 고의로 「도로교통법」 제13조 제3항의 우측통행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사람은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및 제153조제2항).

2대 이상 나란히 통행금지

▪ 자전거의 운전자는 안전표지로 통행이 허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대 이상이 나란히 차도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제5항).

안전거리확보의무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자전거 운전자에게 주의해야 하며, 그 옆을 지날 때에는 자전거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필요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2항).

진로양보의 의무

▪ 뒤에서 따라오는 차보다 느린 속도로 가고자 하는 자전거운전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로 피하여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0조제1항).

앞지르기하는 방법

▪ 자전거의 운전자는 일반 자동차와는 달리 서행하거나 정지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우측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자전거의 운전자는 정지한 차에서 승차하거나 하차하는 사람의 안전에 유의하여 서행하거나 필요한 경우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2항).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

▪ 교통정리가 없는 교차로에서는 다음과 같이 양보운전을 해야 합니다.

▹ 양보운전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자전거운전자는 이미 교차로에 들어가 있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1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자전거운전자는 그 자전거가 통행하고 있는 도로의 폭보다 교차하는 도로의 폭이 넓은 경우에는 서행해야 하며, 폭이 넓은 도로로부터 교차로에 들어가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2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 동시에 들어가려는 자전거운전자는 우측도로의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3항).

▹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에서 좌회전하려는 자전거운전자는 그 교차로에서 직진하거나 우회전하려는 다른 차가 있을 때에는 그 차에 진로를 양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6조제4항).

▪ 위 교차로에서의 양보운전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보행자 보호의무

▪ 자전거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합니다.

▹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운전자를 포함함)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않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 자전거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는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 자전거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 자전거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 자전거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 자전거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 보행자우선도로

√ 도로 외의 곳

▹ 자전거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위 교차로통행방법을 지키지 않은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야간에 전조등을 켤 의무

▪ 자전거운전자는 해가진 후부터 해가 뜨기까지 전조등을 켜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5호).

▪ 해가진 후부터 해가 뜨기까지 전조등을 켜 않은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

▪ 자전거운전자는 좌회전·우회전·횡단·유턴·서행·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38조제1항).

▪ 위 진로변경 시 신호의무를 위반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할 의무

▪ 자전거운전자는 자전거도로, 차도 및 보도(步道) 등을 운전할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해야 하며, 동승자에게도 이를 착용하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4항, 「도로법」 제2조제1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2조제2항 및 「도로법 시행령」 제2조).

▹ 좌우, 상하로 충분한 시야를 가질 것

▹ 청력에 현저하게 장애를 주지 않을 것

▹ 충격 흡수성이 있고, 내관통성이 있을 것

▹ 충격으로 쉽게 벗어지지 않도록 고정시킬 수 있을 것

▹ 무게는 2킬로그램 이하일 것

▹ 인체에 상처를 주지 않는 구조일 것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 운전금지

▪ 자전거는 보행자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금속재 모서리가 둥글게 가공되거나 고무, 플라스틱 등으로 덮여 있어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 크기와 구조를 갖추어야 하며, 자전거의 운전자는 이와 같은 크기와 구조를 갖추지 않아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7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3조의2).

▪ 교통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호).

음주운전 금지 등

▪ 자전거운전자는 약물의 영향과 그 밖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하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지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8항, 제156조제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 "약물"이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환각물질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35호).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전거를 운전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3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제156조제11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전거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전거운전자가 위에 따른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자전거운전자는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해지고, 1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도로교통법」 제156조제12호·제12호의2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발광장치의 착용

▪ 자전거운전자는 밤에 도로를 통행하는 때에는 전조등과 미등을 켜거나 야광띠 등 발광장치를 착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0조제9항).

<주차중이거나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 옆을 지날 때 주의하세요.>

주차한 차량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멈출 수 있도록 서행하고, 문이 열리거나 차가 출발하는 것에 대비하여 충분한 공간을 확보합니다.

느리게 가는 차량을 추월하는 경우에는 자전거가 지나가고 있음을 경음기 등으로 알리고, 차량이 멈추는 것에 대비하여 준비합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성인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 타기』(2021), 5쪽>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의 『전동킥보드 등 운전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안전하게 주차하기

자전거주차장 이용하기

자전거주차장은 어디에 설치되나요?

▪ 「주차장법」 제7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와 시장·군수 및 자치구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함)이 노상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도로 또는 그 주변에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만 해당함)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一般)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가목).

▪ 「주차장법」 제12조 및 제12조의3에 따라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본문).

※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을 말합니다(「주차장법」 제2조제1호나목).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노외주차장인 경우에는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가 제외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단서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 포함)만으로 연결된 곳 또는 도시의 중심 지역 등으로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자전거를 이용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급경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곤란한 지역에 설치된 노외주차장

√ 기계식 노외주차장 및 지하 노외주차장

√ 바닥면적이 330제곱미터 미만으로서 민간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

▪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 및 「주택법」 제35조에 따른 주택건설기준 등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해야 하는 사업주체는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

※ 노상·노외·부설주차장 등 시설물의 구체적인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각 지방자치단체는 별표 1의 자전거 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조례로 이를 완화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

어떻게 설치되나요?

▪ 자전거 주차장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시설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조).

▹ 자전거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고,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해야 하며, 통행인에게 장애가 없도록 할 것



<자전거 주차장 표지판>

▹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자전거 도난 예방 및 사후조치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기 편리할 것

▹ 야간 이용에 대비하여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할 것

▪ 자전거 주차장에는 자전거주차장치를 설치하여 자전거운전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자전거주차장의 모습>

※ 자전거 주차장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자전거 운전자>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기간 무단방치된 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자전거 무단방치하지 마세요.

▪ 누구든지 도로, 자전거 주차장, 그 밖의 공공장소에 자전거를 무단으로 방치하여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무단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에 대해서는 이동·보관·매각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무단방치자전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 무단방치자전거의 보관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통행을 방해하는 자전거를 이동하여 보관해야 하고 그 날부터 14일 동안 해당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및 시·군·구의 게시판 및 인터넷에 다음 사항을 공고하며,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열람부를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군·구에 등록된 자전거는 등록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 보관한 자전거의 종류·모양·수량 및 제조회사명

√ 자전거가 방치되었던 장소 및 이동·보관한 일시

√ 자전거를 보관한 장소

√ 공고기간(14일)이 지난 후에도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된다는 뜻

가.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하며, 공고 후 1년이 지나면 매각대금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

나. 기증, 공영자전거 운영사업(「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의2)에 활용하거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처리

▪ 무단방치자전거의 매각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고기간(14일)이 지난 후에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자전거를 찾아가지 않으면 보관 중인 자전거를 매각하여 그 대금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 이 경우 자전거 1대당 가격이 5만원 이하이고 1회의 총 매각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전거는 수의계약에 따라 매각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2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 보관 중인 자전거나 매각대금을 자전거 소유자에게 반환할 때에는 그 성명과 주소를 확인해야 하며, 자전거의 특징 등에 관해 필요한 질문을 하는 등 그 자전거의 소유자가 틀림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3항).

▹ 공고한 날부터 1년이 지나도록 자전거 소유자가 보관 중인 매각대금을 청구하지 않으면 보관 중인 매각대금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귀속됩니다(「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4항).

2.3. 사고 발생시 대처하기

2.3.1.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자주 발생하는 자전거 사고의 유형과 예방대책은 무엇인가요?

자전거 교통사고의 유형과 예방

※ 아무리 장점이 많은 자전거 출퇴근이라지만 사고가 난다면 아무 소용없겠죠? 그래서 자주 일어나는 자전거 사고의 유형과 그 예방대책을 표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매일매일 안전한 자전거 출퇴근을 위해! 함께 살펴보실까요?

구분	사고의 유형	예방대책
자전거통행방법 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	역주행으로 인한 사고	반드시 우측통행을 하세요.
	자전거도로가 정비되어 있는데도 혼잡한 차도 이용	자전거도로가 있으면 반드시 자전거도로를 이용합니다.
	자동차와 같이 상위차로 이용	자전거는 속도가 가장 느린 '차'이므로 반드시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며, 교외지역에서 차도이용 시에는 길 가장자리(갓길)를 이용합니다.
	교차로 등에서 신호무시	반드시 교통법규를 준수하세요.

부주의, 운전미숙으로 인한 교통사고	주차된 차량 옆을 지날 때(특히, 내리막길에서 주의)	속도를 줄이고 차량과의 간격을 두고 진행합니다. 차량의 문이 열리거나 주차된 차량사이에서 어린 아이들이 뛰어나올 수 있음을 예측하세요.
	횡단보도에서	버스, 택시 승하차장에서는 보행자가 지나갈 때까지 잠시 기다립니다. 횡단보도 진입 전·후에 반드시 좌우를 확인하고 다른 차량과 마찬가지로 횡단신호가 끝날 때까지 정지선에서 기다립니다.
	좁은 길에서 큰길로 나갈 때	정지하여 좌우를 확인한 후 큰길로 진입합니다.
	턱을 올라갈 때	자전거로 턱을 올라갈 때는 수직으로 올라가야 안전합니다. 비스듬히 올라갈 경우 자전거타이어가 턱의 경사면에 끌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출발/멈추기가 서툴 때	출발과 멈추기를 할 때 비틀거리거나 브레이크를 조작하거나, 출발/멈추기 자세가 불안할 경우 교통사고가 나기 쉬우니 조심하세요.
	브레이크 조작을 잘못 했을 때	브레이크 위치와 조작방법을 충분히 익힙니다.
자전거점검 소홀로 인한 교통사고	접이식 자전거의 고정나사 부분이 풀려 발생하는 사고	출발 전, 주행 중 수시 확인하세요.
	브레이크패드가 닳았거나, 브레이크 줄이 녹슬거나 끊어진 경우, 브레이크 레버의 간격이 벌어져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용되지 않을 경우	작동여부 수시 점검하세요.
	타이어가 갈라져 펑크가 나는 경우로 인한 사고	타이어의 마모상태를 수시로 확인합니다. ※ 그 밖에 핸들, 안장, 타이어공기압, 페달, 전조등, 후미등 등의 기본점검을 해야 합니다.
교차로에서의 교통사고	자동차와 나란히 좌회전 하는 경우	신호에 따라 직진한 뒤, 다음신호에서 직진하세요.
	신호를 무시하고 무리한 주행	충분한 여유를 가지고 통행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과의 접촉	직진, 우회전 여부를 수신호로 알리고 차량과 동시에 우회전하지 말고 여유있게 우회전합니다.
	도로를 횡단하는 자전거, 보행자와의 접촉	차량의 직진신호와 보행자의 횡단신호 등에 주의하세요.

<출처 : 행정안전부, 『성인을 위한 안전한 자전거 타기』(2021), 8~9쪽>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사상자 구호 등 조치하기

▪ 자전거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다음의 조치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1.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

2.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 제공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신고하기

▪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자전거의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을 때에는 그 경찰공무원에게,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없을 때에는 가장 가까운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및 출장소를 포함함)에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사고가 일어난 곳
-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 손괴한 물건 및 손괴 정도
- 그 밖의 조치사항 등

※ 다만, 차 대 차 사고로서 사람은 다치지 않고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 등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어떤 책임을 져야 하나요?

민사책임

▪ 자전거를 운전하다가 실수로 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死傷)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자전거운전자는 피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 혹시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신속히 보험처리를 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 콘텐츠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 시 손해배상> 부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 자전거 교통사고를 일으켜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자전거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본문).

▪ 다만,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고도 피해자 구호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경우와 12대 중과실 사고에 대해서는 특례 적용이 제외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2대 중과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신호 및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제한속도 20km/h 초과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자전거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자전거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3. 안전운전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

3.1. 알아두면 좋아요.

3.1.1. 알아두면 좋아요.

"자동차", "오토바이"란

"자동차"란

▪ 법적으로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않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봄)로서 다음의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음의 자동차(다만,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제외함)

√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화물자동차

√ 특수자동차

√ 이륜자동차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 생각보다 많은 차들이 자동차의 범위에 포함되는데요. 이 중 보통 출퇴근수단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라고 하면 승용차, 승합차 그리고 이륜자동차 정도가 될 듯합니다.

> ※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자율주행자동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란

▪ "오토바이"란 법률용어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통상 배기량 125CC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통틀어 가리키는 말입니다.

▸ "원동기장치자전거"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9호).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이륜자동차 가운데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이륜자동차

√ 그 밖에 배기량 125CC 이하(전기를 동력으로 하는 경우에는 최고정격출력 11킬로와트 이하)의 원동기를 단 차(「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전기자전거 및 실외이동로봇은 제외)

친환경 운전하기

친환경 운전 10계명, 알고 계신가요?

▪ 친환경 운전습관만으로도 연비를 약 20%나 향상시킬 수 있고, 연간 8백만톤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으며, 256만 킬로리터의 유류 절감이 가능합니다.

▪ 친환경 운전, 다음의 친환경 운전 10계명을 명심한다면 우리 모두가 실천할 수 있습니다.

> **<친환경운전 10계명>**
>
> 1. 경제속도(60~80킬로미터) 지키기
> 2. 내리막길 운전 시 가속페달 밟지 않기

3. 출발은 천천히

4. 공회전 하지 않기

5. 타이어 공기압 체크하기

6. 한 달에 한 번 자동차 점검하기

7. 정보운전의 생활화

8. 트렁크 비우기

9. 친환경 자동차 선택하기

10. 유사연료나 인증을 받지 않은 첨가제 사용 안하기

<출처 :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기획단 으라車車!!!>

알뜰한 운전자라면 이 정도는 챙겨야죠.

실시간 교통정보 파악하기

▪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위에 서 있다 보면 시간은 물론 기름값이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럴 때 사정이 나은 도로로 우회할 수 있다거나 정체상황이 언제 풀릴지 알 수 있다면 도로위에 버리는 기름을 조금이나마 줄여볼 수 있을 텐데요.

▪ 여기 도로 곳곳의 사정을 실시간으로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알뜰살뜰한 운전자라면 꼭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http://www.ex.co.kr/)를 방문해 보세요. 교통정보 배너를 클릭하시면 실시간으로 교통속보, 교통상황, 정체구간 등 고속도로의 교통상황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답니다.

▹ 한국도로공사(https://www.ex.co.kr)는 실시간 문자서비스로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이용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한국도로공사서비스(https://exservice.co.kr)-고객서비스-콜센터-문자상담>

고속도로 출퇴근할인 적용시간대와 할인율 알아두기

▪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진출입요금소간 거리를 기준으로 20km 미만의 구간)를 이용하여 출퇴근하는 자동차운전자로서 하이패스 및 하이패스 기능이 포함된 전자적이 지불수단으로 수납하시는 분이라면 다음과 같은 출퇴근할인 적용시간대와 할인율 알아두셨다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출처 : 한국도로공사-고속도로-통행요금-통행요금제도-통행요금 안내-할인/할증제도].

할인율	적용시간	대상차량
50%	출근 : 05:00 ~ 07:00	승용차, 승합차, 10톤 미만 2축 화물차 ※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적용 제외, 출구요금소 통과시각 기준
	퇴근 : 20:00 ~ 22:00	
20%	출근 : 07:00 ~ 09:00	
	퇴근 : 18:00 ~ 20:00	

오토바이 라이더라면 안전을 위해 꼭 기억하세요!

※ 기름값도 절약하고 바람을 가르며 달리는 기분을 만끽하기엔 오토바이 출퇴근만한 것도 없을 텐데요. 하지만 항상 안전이 걱정되시죠? 오토바이 안전하게 타기! 다음 두 가지만 기억하신다면 문제없습니다!

첫째, 올바른 라이딩 복장을 착용하세요.

▪ 라이더들이 가장 간과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안전운행에 기본이 되는 ´올바른 라이딩 복장´입니다.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점이지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기도 하죠. 올바른 라이딩 복장은 라이더에게 자신감과 편안함을 주며 시야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둘째, 운행 전 사전점검은 필수입니다!

▪ 운행 전 사전점검은 운행 중 예상치 못했던 고장을 예방하고 오토바이가 라이더의 의지대로 적절하게 반응할 수 있게 해주는 필수요소인데요. 라이딩 전 항상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오토바이의 작은 이상 여부도 바로 찾아낼 수 있으므로 안전운행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올바른 라이딩 복장, 운행 전 점검사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공식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도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 오토바이 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3항제2호).
-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 자, 이제부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 보유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3.2.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3.2.1. 교통법규 지키기

자동차,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운전자가 알아둘 주요 교통법규

▪ 모든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등 교통관련법규를 지켜야 합니다. 그렇다면 자동차와 오토바이 운전자가 반드시 알고 지켜야 할 중요한 교통관련법규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한속도 지키기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에 따라 도로를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7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속도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범칙금(과태료) 및 벌점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제93조제1항, 별표 6,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초과속도	범칙금(과태료)		벌점
100km/h 초과	-		100
80km/h 초과 100km/h 이하	-		80
60km/h 초과 80km/h 이하	승합자동차	13만원(14만원)	60
	승용자동차	12만원(13만원)	
	오토바이	8만원(9만원)	
40km/h 초과 60km/h 이하	승합자동차	10만원(11만원)	30
	승용자동차	9만원(10만원)	
	오토바이	6만원(7만원)	
40km/h 이하 20km/h 초과	승합자동차	7만원(8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7만원)	
	오토바이	4만원(5만원)	
20km/h 이하	승합자동차	3만원(4만원)	-
	승용자동차	3만원(4만원)	
	오토바이	2만원(3만원)	

▹ 최고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고 시속 100km/h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9호).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운전하면 1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 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3조제2항제2호).

√ 최고속도보다 100km/h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운전을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도로교통법」 제151조의2제2호),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제1항 및 별표 28 제2호 6의4).

안전거리 확보하기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앞차의 뒤를 따를 때 앞차가 갑자기 정지하게 되는 경우에 그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만한 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9조제1항).

▪ 위의 안전거리 확보의무를 위반한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안전거리 미확보	일반도로	승합자동차	2만원	10
		승용자동차	2만원	
		오토바이	1만원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앞차의 왼쪽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1조제1항).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른 명령 또는 경찰관의 지시에 따르거나 위험방지를 위해 정지 또는 서행하고 있는 다른 차를 앞지르거나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합니다(「도로교통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 앞지르기 차로에서 계속 주행을 하는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 지정차로 통행위반에 해당되어, 운전자는 차종에 따라서 5만원에서 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되고 더불어 벌점도 10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교통량 증가 등 도로 상황 때문에 부득이하게 시속 80km 미만으로 통행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앞지르기가 아니더라도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60조제1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39조, 별표 9 및 별표 28).

▪ 위의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앞지르기 방법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0
	승용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앞지르기 금지 시기 및 장소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앞지르기 방해금지 위반	승합자동차	5만원	-
	승용자동차	4만원	
	오토바이	3만원	

▪ 끼어들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승합자동차 : 4만원
- 승용자동차 : 4만원
- 오토바이 : 3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신호기로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 들어가려할 때 진행하려는 진로의 앞쪽에 있는 차 또는 노면전차의 상황에 따라 교차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넘은 부분을 말함)에 정지하게 되어 다른 차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5조제5항).

▪ 위 교차로 꼬리물기 금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위 범칙금 통고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60조제3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6).

- 승합자동차 : 6만원
- 승용자동차 : 5만원
- 오토바이 : 4만원

보행자 보호하기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운전을 할 때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교통법규 중 하나가 바로 보행자 보호의무입니다. 보행자 보호 위반으로 발생하는 사고는 모두 인명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인데요. 보행자 보호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고 하는 때에는 그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며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1항).
2.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는 교차로에서 좌회전 또는 우회전을 하려는 경우에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 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2항).
3.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않은 교차로 또는 그 부근의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3항).
4.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도로에 설치된 안전지대에 보행자가 있는 경우와 차로가 설치되지 않은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4항).
5.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를 횡단하고 있을 때에는 안전거리를 두고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로 하여금 안전하게 횡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5항).
6.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6항).

   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② 보행자우선도로

   ③ 도로 외의 곳
7.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설치된 횡단보도 중 신호기가 설치되지 아니한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정지선을 말함)에서는 보행자의 횡단 여부와 관계없이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7조제7항).

▪ 위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1., 2. 및 7. 위반	승합자동차	7만원	10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4만원	
3.부터 5.까지 및 6. ①, ② 위반	승합자동차	5만원	
	승용자동차	4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3만원	

무면허 운전하지 않기

▪ 운전면허를 받지 않거나 운전면허가 정지된 사람이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2조제1호 및 제154조제2호).

음주운전 금지

▪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

▪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3항).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을 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벌됩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2호·제3호).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또한, 음주운전을 하면 다음의 기준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및 별표 28).

행정처분	사유
운전면허 취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을 넘어서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한 때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 운전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에 불응한 사람이 다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에서 운전한 때
운전면허 정지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을 넘어서 운전한 때(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

음주측정 불응 및 음주측정방해행위 금지

▪ 경찰관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호흡조사로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며, 이때 운전자는 경찰관의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

※ 위의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해서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3항).

▪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위에 따른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44조제5항).

▪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방해행위를 한 사람은 운전면허가 취소되고,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3호·제3호의2, 제148조의2제2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 이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이를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함)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제1항제1호).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 운전자는 운전 중에 휴대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 포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 위의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승합자동차	7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4만원	

운전 중 방송 등 영상물을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장치(이하 ´영상표시장치´라 함) 표시 및 조작 금지

▪ 운전자는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를 조작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의2).

▪ 운전자는 운전 중에 볼 수 있는 위치에 영상표시장치(운전자가 휴대하는 것도 포함)가 표시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1호).

-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 지리안내 영상 또는 교통정보안내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국가비상사태·재난상황 등 긴급한 상황을 안내하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운전을 할 때 자동차등의 좌우 또는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두는 영상이 표시되는 경우

▪ 위의 운전 중 영상표시장치 표시 및 조작 금지의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벌점 및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 8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위반 행위	범칙금		벌점
운전 중 영상표시 장치 표시 및 조작	승합자동차	7만원	15
	승용자동차	6만원	
	이륜자동차 및 오토바이	4만원	

난폭운전 금지

▪ 금지되는 행위

- 자동차 등의 운전자는 다음 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 또는 반복하여 다른 사람에게 위협 또는 위해를 가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하게 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46조의3).

√ 신호 또는 지시 위반

√ 중앙선 침범

√ 속도의 위반

√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안전거리 미확보, 진로변경 금지 위반, 급제동 금지 위반

√ 앞지르기 방법 또는 앞지르기의 방해금지 위반

√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 고속도로에서의 앞지르기 방법 위반

√ 고속도로 등에서의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 교통안전교육

▹ 난폭운전으로 운전면허효력 정지처분을 받게 되거나 받은 사람으로서 그 정지기간이 끝나지 않은 사람은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제2호).

▹ 이 경우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의무교육의 연기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73조제2항 후단).

▪ 제재조치

▹ 운전면허(연습운전면허는 제외)를 받은 사람이 난폭운전을 한 경우 시·도 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5호의2).

▹ 자동차 등의 운전자가 난폭운전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1조의2).

※ 지금까지 살펴본 교통법규들과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운전자가 알아두어야 할 그 밖의 다른 교통법규들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의 <교통·운전>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3.3.1.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교통사고시 대처방법

▪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자에게 안전운전의 생활화는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운전을 하다보면 부득이하게 내 자신이나 상대방의 실수로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교통사고가 났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하세요.

▪ 먼저 사상자를 구호하세요.

▹ 자동차나 오토바이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한 경우 그 차의 운전자는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성명·전화번호·주소 등을 말함)을 제공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교통사고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사람(주·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은 사람은 제외)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

▪ 추가 교통사고 방지조치를 취하세요.

▹ 사고직후 후속차량에 의해 추가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 등 추가사고가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후속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서 고장이나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운전자는 자동차를 해당 도로가 아닌 다른 곳으로 옮기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후방에서 접근하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66조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1호·제3항).

▹ 야간에는 사방 500미터 지점에서 식별할 수 있는 적색의 섬광신호·전기제등 또는 불꽃신호를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0조제1항제2호).

※ 사고차량의 안전조치가 끝난 후에는 운전자도 자신의 안전을 위해 도로 밖으로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언뜻 고속도로상 갓길이 안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갓길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므로 반드시 도로 밖의 안전지대로 대피하세요.

▪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목격자 및 증거물 등을 확보하세요.

▹스프레이 표시 등으로 사고현장을 보존하세요.

▹현장사진을 찍어두세요. 사고현장에서 최종적인 차의 위치는 사고원인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단서가 된답니다. 그러므로 차를 이동시키기 전에 사고차량이 다 나오도록 전체적인 현장을 찍어두세요. 상대방 파손부위와 번호판도 찍으면 좋습니다.

▹현장증거를 확보하세요. 최근 블랙박스 교통사고 발생시 가장 중요한 증거물이 되고 있으므로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면 좋습니다. 실제로 블랙박스의 녹화화면은 종종 미궁에 빠질 뻔한 사고의 진실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단서가 되고 있습니다. 블랙박스가 없다면 갖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블랙박스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셔도 됩니다. 더불어 주변에 CCTV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가해자의 신원과 가해차량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메모해 둡니다.

보험접수 및 교통사고 신고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차의 운전자 등은 경찰공무원이 현장에 있는 경우 해당 경찰공무원에게, 현장에 없는 경우 가장 가까운 국가경찰관서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본문).

※ 다만, 차만 손괴된 것이 분명하고 도로에서의 위험방지와 원활한 소통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보험사를 불러 처리하시면 됩니다(「도로교통법」 제54조제2항 단서).

※ 위에 따른 사고발생 시 조치상황을 신고하지 않은 사람은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집니다(「도로교통법」 제154조제4호).

> ※ 교통사고 발생시 신고의무와 올바른 조치요령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발생시 조치-교통사고 발생시 조치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3.2. 피해보상 받기

교통사고 발생 시 어떤 책임을 지고 피해보상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민사책임 및 피해보상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사람을 사상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물건을 손괴한 경우 「민법」 제750조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호의동승 사고발생 시 손해배상액이 경감되나요?>**
>
> · 야근하다 늦게 퇴근하거나 집으로 가는 방향이 같은 경우 회사동료를 차에 태워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데려다 준 경우라면 뿌듯하고 기분 좋겠지만 자칫 호의를 베풀었다가 사고라도 나면 낭패인데요.
>
> · 이처럼 자동차나 오토바이로 출퇴근하는 길에 호의로 회사동료를 태워주었다가 사고가 나서 동료가 다쳤다면 일반적인 사고의 경우에 비해 손해배상액이 경감될까요?
>
> · 결론적으로 대법원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인데요.
>
> · 즉 대법원은 차량의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으나, 사고 차량에 단순히 호의로 동승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바로 이를 배상액 경감사유로 삼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53141 판결).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30조).

> ※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 『교통·운전』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교통사고 책임 및 배상-교통사고 발생시 손해배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형사책임

▪ 교통사고를 일으킨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가 피해자의 통상 치료비 전액과 손해배상금 전액을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4조제1항).

-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거나 음주측정을 방해한 경우
- 사고 후 도주
- 12대 중과실 사고인 경우

> **<"12대 중과실"이란 무엇인가요?>**
>
> ·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12대 중과실 사고에서 말하는 "12대 중과실"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단서).
>
> √ 신호 및 지시 위반
>
> √ 중앙선 침범
>
> √ 제한속도 20km/h 초과
>
> √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
> √ 철길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 √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
> √ 무면허 운전
>
> √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
> √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
> √ 승객의 추락 방지의무 위반
>
> √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
> √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

출퇴근길에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참고로 대법원이 자동차나 오토바이 출퇴근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피해에 대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회사에서 다른 용도로 운행하는 차량을 근로자들이 사실상 출근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음에도 회사가 이를 묵인하여 온 경우, 근로자가 그 차량에 탑승하고 출근하던 중 일어난 교통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 일용직 산불감시원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하다가 산불감시업무 담당구역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망인이 자기 소유의 오토바이를 이용하여 산불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용되었고 망인의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까지 출근시간에 맞추어 도착할 수 있는 대중교통수단이 없었으며 망인이 맡은 산불감시대상지역이 매우 넓어 도보나 자전거를 이용한 업무수행이 곤란하고 망인이 집에서 소속 면사무소로 출근하기 위하여 선택한 경로가 최단경로로서 합리적인 경로라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두4458 판결).

※ 근로자가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급여 외에 일정한 대가를 받고 자신의 승용차에 동료 직원을 태워 통상적인 경로에 따라 출근하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사안에서,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두1191 판결).

※ 인력업체가 제공한 차량을 운전하고 건설회사의 공사현장으로 출근하던 근로자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안에서, 사고 당시 출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사업주인 건설회사의 객관적 지배·관리 아래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시 하였습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두184 판결).

4. 건강 9단! 걸어서 출퇴근하기

4.1. 알아두면 좋아요.

4.1.1. 알아두면 좋아요.

걸어서 출퇴근하면 건강에 좋아요.

걸어서 출퇴근

▪ 직장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시간을 내서 운동하기란 참 쉽지 않은 듯합니다. 그래서인지 요즘엔 걸출족(걸어서 출퇴근하는 하는 사람들), 운도녀(운동화를 신고 출퇴근하는 도시여자)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 걸어서 출퇴근하면 환경을 보호할 수 있음은 물론 건강증진에도 큰 도움이 되는데요. 걷기의 운동효과, 궁금하시죠?

▹ 신체활동이 부족한 사람은 고혈압, 제2형 당뇨병, 심뇌혈관 질환, 대장암, 유방암, 골다공증, 근감소증, 비만 등의 발생 위험이 0, 우울증 등 정신건강 저하의 위험에 노출된다고 하네요.

▹ 또한,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3.8%의 치매가 신체활동 부족과 연관이 있어 규칙적인 신체활동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규칙적인 걷기의 10대 효과>



<출처: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 2020, 5~6면>

올바른 걷기방법은 무엇인가요?

얼마나 걸어야 하나요?

▪ 한국인을 위한 신체활동 지침서에서는 건강증진을 위해 성인의 경우 일주일에 150분 이상의 중강도 신체활동이나 75분 이상의 고강도 신체활동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 또한, 고강도 신체활동의 1분은 중강도 신체활동의 2분과 같기 때문에, 중강도 신체활동과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신체활동을 해도 됩니다.

▹ "빠르게 걷기"는 중강도 신체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15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실천합니다. 예를 들어 하루에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를 주 5일 이상 실천할 수 있습니다.

▹ "매우 빠르게 걷기"는 고강도 신체활동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주일에 75분 이상 매우 빠르게 걷기를 실천합니다. 예를들어 하루에 15분 이상 매우 빠르게 걷기를주 5일 이상실천할수 있습니다.

▹ 빠르게 걷기와 매우 빠르게 걷기를 섞어서 실천할 경우 매우 빠르게 걷기 1분이 빠르게 걷기 2분임을 인지하고 각 속도에

상당하는 시간만큼 걸으면 됩니다.

올바른 자세로 걷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른 자세로 걸으면 깊은 호흡(심호흡)이 가능하고 어깨와 목의 긴장을 풀어주며 허리나 골반의 통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바른 팔과 다리의 동작을 통해 앞으로 힘차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산책로나 운동장 혹은 러닝머신 위에서 걸을 때도 올바른 자세로 걸어야 합니다.



<올바른 발자국 모양>

<출처: 보건복지부·한국건강증진개발원, 『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 2020, 9면>

※ 걷기방법, 걷기효과 등 출퇴근길 걷기에 도움이 될 만한 보다 다양한 정보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자료실-홍보자료-한국인을 위한 걷기 가이드라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4.2. 안전하게 출퇴근하기

4.2.1. 통행방법 지키기

보행자 통행방법을 지켜주세요.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신호등과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 또는 모범운전자와 같은 경찰보조자(이하 ´경찰공무원등´이라 함)가 하는 신호 또는 지시를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1항 및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조).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도로를 통행하는 보행자는 신호등의 신호와 교통정리를 하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 또는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5조제2항).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도로의 통행방법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언제나 보도로 통행해야 합니다. 다만, 차도를 횡단하는 경우, 도로공사 등으로 보도의 통행이 금지된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1항).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보행자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있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된 도로를 포함함)에서는 길가장자리 또는 길가장자리구역으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2항).

▪ 보행자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는 도로의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전단).

▸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일방통행인 경우에는 차선으로 구분되지 않은 도로에 한정함. 이하 같음)

▸ 보행자우선도로

※ 이 경우 보행자는 고의로 차마의 진행을 방해해서는 안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3항 후단).

▪ 보행자는 보도에서 원칙적으로 우측통행을 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8조제4항).

도로의 횡단방법

▪ 보행자는 횡단보도, 지하도, 육교나 그 밖의 도로 횡단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도로에서는 그 곳으로 횡단해야 합니다. 다만, 지하도나 육교 등의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지체장애인의 경우에는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도로 횡단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도로를 횡단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육교 바로 밑 또는 지하도 바로 위로 횡단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도로 횡단시설이 아닌 곳으로 횡단한 보행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보행자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도로에서는 가장 짧은 거리로 횡단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3항).

▪ 보행자는 차와 노면전차의 바로 앞이나 뒤로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횡단보도를 횡단하거나 신호기 또는 경찰공무원등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4항).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2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 보행자는 안전표지 등에 따라 횡단이 금지되어 있는 도로의 부분에서는 그 도로를 횡단해서는 안 됩니다(「도로교통법」 제10조제5항).

※ 이를 위반한 보행자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9).

4.2.2. 보행안전 보장받기

출퇴근길 보행안전, 이렇게 보장됩니다.

보행권 보장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쾌적한 보행환경에서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행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노인, 임산부, 어린이, 장애인 등 스스로의 힘으로는 보행이 불편한 사람이 차별 없이 보행자길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

<"보행자길"이란 무엇인가요?>

· "보행자길"이라고 하면 얼핏 생각할 때 보도만을 떠올리기 쉽지만, 보도 외에도 법률상 보행자길의 범위는 상당히 넓답니다. 보행자길에 포함되는 장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보행자길"이란 보행자(유모차 및 보행보조용 의자차를 포함함)의 통행을 위한 장소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도로교통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보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길가장자리구역

√ 「도로교통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횡단보도

√ 「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 「자연공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원구역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안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항만법」 제2조제5호라목에 따른 항만친수시설 중 보행자의 통행에 제공되는 장소

√ 지하보도, 육교, 그 밖의 도로횡단시설

√ 그 밖에 통학로, 탐방로, 산책로, 등산로, 숲체험코스, 골목길 등 불특정 다수의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장소

▪ 이처럼 출퇴근길 보행안전은 법으로 보장되고 있는데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실까요?

어떻게 보장되나요?

▪ 보행자 통행의 우선

▹ 보행자길에서 차마를 운전하는 사람은 보행자의 안전한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

<"차마"란 무엇인가요?>

· "차마"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

√ 자동차

√ 건설기계

√ 오토바이

√ 자전거

√ 사람 또는 가축의 힘이나 그 밖의 동력(動力)으로 도로에서 운전되는 것(다만, 철길이나 가설(架設)된 선을 이용하여 운전되는 것, 유모차, 보행보조용 의자차, 노약자용 보행기, 실외이동로봇 등은 제외함)

√ 교통이나 운수(運輸)에 사용되는 가축

▹ 차마의 운전자가 보행자전용길을 이용할 때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걸이 속도로 운행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

▹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보행자의 통행을 보호하기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에 보행자전용도로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1항).

√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 표시한 도로를 말합니다(「도로교통법」 제2조제31호).

▹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전용도로를 통행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전용도로에 차마의 통행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2항).

※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구별	범칙금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7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3만원

▹위에 따라 보행자전용도로의 통행이 허용된 차마의 운전자는 보행자를 위험하게 하거나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도록 차마를 보행자의 걸음 속도로 운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28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차마의 운전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범칙금을 부과 받습니다(「도로교통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및 별표 8).

구별	범칙금
승합차·4톤 초과 화물자동차·특수자동차·건설기계·노면전차	7만원
승용차·4톤 이하 화물자동차	6만원
오토바이	4만원
자전거·손수레·경운기·우마차	3만원

▪불법시설물의 우선 정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함. 이하 '특별시장등'이라 함)는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통행에 장애가 되는 노상적치물, 옥외광고물 등 보행에 불편을 주는 불법시설물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정비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불법시설물의 정비 권한이 다른 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할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불법시설물을 정비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위에 따라 불법시설물의 정비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어떤 곳이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나요?>

· 특별시장등은 다음에서 정하는 구역을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구역

√ 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인 등의 통행 빈도가 높은 구역

√ 역사적 의의를 갖는 전통과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구역

√ 그 밖에 보행환경을 우선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

▹특별시장등은 보행환경개선지구에서 보행자의 안전에 장애가 되거나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소음, 매연, 냄새, 먼지를 배출하는 자에게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

√ 지방자치단체는 위의 권고에 따라 보행자의 안전과 피해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 보행자 안전을 위한 CCTV나 보안등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범죄로부터 보행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행자길에 고정형 CCTV나 보안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범지역이나 인적이 드문 외진 곳 등 범죄발생의 위험이 높은 지역에 있는 보행자길에는 고정형 CCTV와 보안등을 설치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

√ 고정형 CCTV는 보행자길 중 과거에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범죄 발생의 가능성이 높은 구역에 전신주, 벽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설치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3항 및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 누구든지 위에 따라 설치된 고정형 CCTV나 보안등을 파손해선 안 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고정형 CCTV 또는 보안등을 파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 공사 중 보행자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

▹ 인공구조물이나 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목적으로 보행자길을 점용하는 자는 보행자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의 기준에 따라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합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3항,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및 별표 2).

√ 보행자의 불편을 줄일 수 있도록 가장 짧고 안전한 경로로 설치되어야 하며, 보행자의 시야를 확보하고 기울기를 최소화하며, 계단이나 차도와의 경계석 등을 제공할 것

√ 최소 2미터 이상의 보행안전통로의 유효폭을 확보할 것(다만, 지형상 불가능하거나 기존 도로의 증축·개축 시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2미터이상으로 완화할 수 있음)

√ 보행안전통로는 교통약자를 포함한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미끄럽지 않고 평평하게 설치되고, 투수성(透水性), 배수성 등의 기능을 갖출 것

▹ 특별시장등은 위에 따라 보행자길의 점용자가 보행안전통로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

※ 이를 위반하여 위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

4.3. 사고발생시 대처하기

4.3.1. 피해보상 받기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났다면 이렇게 보상받으세요.

버스에 치인 경우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은 손해에 대해 중복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습니다.

※ 버스에 치인 경우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전거에 치인 경우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자전거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전거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 만약 자전거운전자가 자전거 운전 중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는 자전거 보험을 들어놓았다면 해당 보험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받게 됩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동차나 오토바이의 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및 「민법」 제750조).

▪ 또한, 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및 제30조).

※ 자동차나 오토바이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안전운전 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택시에 치인 경우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나 해당 택시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택시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택시 교통사고 처리절차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

▸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본문).

▹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단서).

▪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0조제1항, 제5조제1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다만, 그 손해액이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함)

▹ 부상을 입은 경우 : 상해급별 한도금액(최고 3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 최고 1억5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후유장애"란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가 생긴 경우를 말합니다.

▹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 중 해당 자동차로부터 낙하된 물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1조).

> ※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 발생 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제도를 통해 보상받는 방법, 절차, 구비서류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지원사업(https://tvsis.tacss.or.kr) 및 자동차사고 피해자 상담전화(☎ 1544-0049)>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상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 근로자가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5. 여유만만! 택시로 출퇴근하기

5.1. 알아두면 좋아요.

5.1.1. 알아두면 좋아요.

알아두면 좋아요.

택시의 종류와 요금체계

▪ 택시의 종류를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법인택시, 개인택시 그리고 모범택시 정도를 떠올리게 되는데요.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구분에 따르면 택시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된답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2항,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경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0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길이 3.6m 이하이면서 너비 1.6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소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CC 미만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길이 4.7m 이하이거나 너비 1.7m 이하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중형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1,6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길이 4.7m 초과이면서 너비 1.7m를 초과하는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대형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가. 배기량 2,000CC 이상인 승용자동차(승차정원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 나. 배기량 2,000CC 이상이고 승차정원이 13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
모범형	배기량 1,9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승차정원 5인승 이하의 것만 해당)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고급형	배기량 2,800CC 이상의 승용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

※ 위와 같은 구분에도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구분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

▪ 택시요금체계는 각 자치단체별로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자치단체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택시요금체계는 <서울특별시 홈페이지-분야별 정보-교통-버스·지하철·택시-택시-택시요금체계>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하지 맙시다.

▪ 불법 무임승차는 금물입니다! 택시에 무임승차한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에 처해 집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제1항제39호).

▪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지 마세요! 운행 중(택시운전자가 승객의 승차·하차 등을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를 포함, 이하 같음)인 택시의 운전사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1항).

▪ 운행 중인 택시운전자를 폭행 또는 협박하여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집니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제2항).

택시에 탑승하면 안전띠를 착용하세요.

▪ 최고속도, 도로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고속국도 및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운행되는 택시에 탑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본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및 제2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객은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아도 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의2제1항 단서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 부상·질병·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신장·체중, 그 밖의 신체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사람

▪ 택시운전사는 승차하는 승객에게 택시가 출발하기 전에 좌석안전띠를 착용하도록 음성방송이나 말로 안내해야 합니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제3항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

불편사항이 있을 땐 신고하세요.

▪ 각 자치단체에서는 택시 이용 서비스 개선을 위해 승차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편을 당한 고객들로부터 신고접수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시 거주자는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를 통해 신고할 수 있고, 다른 지역의 거주자는 해당 시청·군청·구청의 담당부서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신고시에는 해당 택시의 차량번호, 장소, 일시, 위반내용 등을 가능한 자세히 알려주세요. 차량번호는 휴대폰 카메라등으로 촬영해두면 좋습니다.

▹ 승차거부나 부당요금 징수가 사실로 밝혀지면 해당 택시운전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제1호).

분실물, 이렇게 찾으세요.

▪ 택시를 이용하고 직장이나 집에 도착해보니 지갑이나 휴대폰같은 소지품을 잃어버렸던 적이 있으신가요? 물론 물건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미리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혹시 잃어버렸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이렇게 대처해 보세요.

▪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기억한다면

▹ 법인택시의 경우 해당 택시회사에,

▹ 개인택시의 경우 택시운전자나 개인택시조합에 직접 전화해 물건을 찾으면 됩니다.

▪ 물건을 놓고 내린 택시의 차량번호와 하차시간, 하차위치를 모르겠다면

※ 각 시·도 홈페이지에서 운영하는 대중교통분실물센터를 방문하여 검색해 보세요.

> ※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특별시 대중교통 통합분실물센터>를 방문하거나 <120 다산콜센터(☎ 국번없이 120)>에 문의하여 분실물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 대중교통 통합 분실물 센터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운영 중인 <핸드폰찾기콜센터>와 협력하고 있으므로 핸드폰을 잃어버렸을 때도 접속하여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택시에서 주운 물건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나요?

▪ 분실자의 전화번호 등을 알 수 있다면 직접 돌려줘도 되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주운 물건을 해당 택시운전자에게 인도하거나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 등 소속 경찰관서를 포함)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경찰단 사무소에 제출하면 됩니다(「유실물법」 제1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 휴대폰을 주운 경우 가까운 우체국에 신고하거나 우체통에 넣어주세요. 이 경우 <핸드폰 찾기 콜센터>에서 보관하여 분실자에게 전달됩니다.

▪ 주운 물건의 주인을 찾아주면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잃어버린 물건을 반환을 받는 사람은 물건가액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 내에서 습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유실물법」 제4조).

▹ 다만, 이러한 보상금은 물건을 반환한 후 1개월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유실물법」 제6조).

▪ 주운 물건을 돌려주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해 집니다(「형법」 제360조제1항).

▪ 경찰서 등에 보관된 습득물은 공고 후 6개월 내에 소유자가 권리를 주장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도 3개월 이내에 물건을 받아가지 않으면 소유권을 잃고, 교부받을 자가 없는 물건은 국고 또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금고에 귀속됩니다. 귀속된 물건 중 재산적 가치가 적은 물건은 경찰서장 등이 폐기하거나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253조, 「유실물법」 제14조·제15조 및 「유실물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 유실물 처리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찰청 유실물 종합포털-유실물 종합안내-유실물 처리절차>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5.2. 사고발생 시 대처하기

5.2.1. 피해보상 받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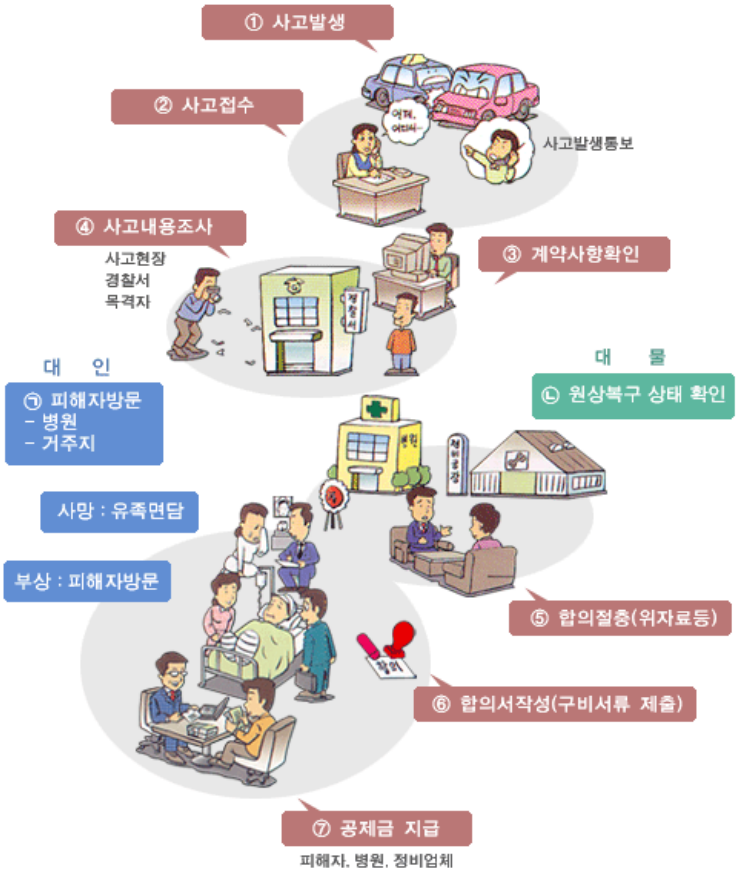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나면 어떻게 보상받나요?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교통사고를 내어 택시 승객을 사상하거나 택시 승객의 물건을 손괴한 경우 사고를 낸 택시운전자 또는 해당 운전자가 속한 택시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택시운전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이나 보험회사를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 택시로 출퇴근하던 중 사고가 난 경우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 전국택시공제조합-보상안내-보상안내>

※ 택시출퇴근 중 사고발생 시 택시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기준, 보상처리절차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택시공제조합> 또는 <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차량 과실 또는 택시운전자와 상대차량의 쌍방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 과실비율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 · 택시 승객은 합의된 내용에 따라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에게 각각 합의된 과실 비율에 따라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 사고에 대해 책임 있는 운전자는 피해를 입은 택시 승객에게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 「민법」 제750조 및 제756조 등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이나 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피해보상을 한 경우에는 그러한 범위 내에서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가해 차량이 버스인 경우 피해보상 받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녹색생활 실천! 대중교통 이용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차량이 자전거인 경우 피해보상 받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도전! 자전거 출퇴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가해 차량이 자동차 또는 오토바이인 경우 피해보상 받기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 콘텐츠 <안전운전 하세요!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하기-사고발생시 대처하기-피해보상 받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과실비율에 대해 다툼이 있는 경우

▹ 사고로 피해를 입은 승객은 해당 택시운전자가 가입한 택시공제조합(개인택시의 경우 개인택시공제조합)에 직접 공제금(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0조).

택시출퇴근 중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란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가 업무상의 재해를 당한 경우에 지급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조).

※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합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제1호).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나요?

▪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은 경우는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며, 공무상 부상 또는 그 부상으로 장해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공무와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공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

▹ 공무원이 공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는 경우(재요양 포함)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요양급여를 받습니다(「공무원 재해보상법」 제22조제1항).

▪ 일반근로자의 경우 출퇴근하던 중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

▹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